

마약 등 안전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안전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김규남 의원 등 34명

나. 의안번호 : 제1095호

다. 제출일자 : 2023. 8. 14.

라. 회부일자 : 2023. 8. 21.

2.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마약 등 안전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과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 함

3. 제안이유

- 최근 마약사범 증가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운전은 68%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

급함.

- 또한 최근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6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피해자에 대한 국민정 공분이 커지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마약 및 약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및 약물운전의 방지를 위해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 관련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서울시장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원안가결

- 최근 약물중독 운전자의 인도 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 등 약물복용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1) 교통운영과-13058호(2023.9.1.)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에 동의함

※ 도로교통법령 관련 규정

- 법 제45조 :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
- 법 제50조제8항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약물영향 등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 시행규칙 별표28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시 면허취소 처분 규정

5. 이 송 처

가. 국회

나. 정부 및 기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칭)마약 등 안전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와 함께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에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마약류의 정의 및 현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²⁾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괄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³⁾에서는 마약류가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반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2) 마약류의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일부 발췌)

구 분		세부 종류(일부)
마 약 (126종)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코파인, 헤로인,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257종)	비의료용	디메톡시프로모암페타민 등
	의료용	암페타민, 텍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대 마 (1종)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식품

3) 마약류 정의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① 의존성: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함
- ② 내 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③ 금단증상: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남
- ④ 반사회성: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

특히 마약류는 진통이나 마취목적 등 의료목적 외의 상습적인 오·남용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 대검찰청 자료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연간 1만 2천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⁵⁾은 35.0%로 강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류의 특성상 단속과 처벌은 물론 중독과

4)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출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발행)

(단위 : 명)

마약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2,631 (-10.7%)	16,044 (27.2%)	18,050 (12.5%)	16,153 (-10.5%)	18,395 (13.9%)
마 약	1,467 (-0.5%)	1,804 (23.0%)	2,198 (21.8%)	1,745 (-20.6%)	2,551 (46.2%)
항 정	9,613 (-12.0%)	11,611 (20.8%)	12,640 (8.9%)	10,631 (-15.9%)	12,035 (13.2%)
대 마	1,533 (-11.2%)	2,629 (71.5%)	3,212 (22.2%)	3,777 (17.6%)	3,809 (0.8%)

5) 마약류 사범 재범률

(출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발행)

(단위 : 명)

마약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체사범	12,631	16,044	18,050	16,153	18,395
재범인원	4,622	5,710	5,933	5,916	6,436
재범률(%)	36.6	35.6	32.9	36.6	35.0

*주: 재범인원은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재범의 고리까지 끊어내야 비로소 마약류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마약류 투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범죄, 폭행, 살인 등의 “2차 범죄”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 제3조6)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은 같은 법 제58조~제64조(벌칙)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마약 등 약물을 복용 후 운전(이하 ‘마약운전’이라 한다)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5조7)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생략)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생략)
- 7)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벌칙)8)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약 등 약물운전방지법 제정 필요성 관련

- 2021년 1월 19일 서부간선도로에서 술과 마약에 취한 가해자가 400m 가량을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⁹⁾ 유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가해자가 차량을 인도에 돌진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뇌사에 빠진 사고가 발생¹⁰⁾하는 등 마약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과장이 점차 커지고 있음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술·마약·역주행' 사고로 택시기사 사망...30대 운전자, 징역 5년 (머니투데이, 2021.8.19.)

- 사고일시 및 장소: 2021.1.19. 오전 4시 /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 사고내용: 가해자(30대 중국인)가 마약과 술에 취해 역주행 운전을 하다 상대방 운전자 사망

- 1심 결과: 징역 5년, 추징금 20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10) 마약에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매일경제, 2023.8.11.)

- 사고일시 및 장소: 2023.8.2. 20:10 / 강남구 논현로 853 (압구정역 4번출구 인근)

- 사고내용: 가해자가 마약투약한 상태에서 인도를 돌진하여 피해자 중상입고 뇌사상태빠짐

-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위험운전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 최근 5년간 마약류를 투약한 후 발생한 범죄유형¹¹⁾ 중 교통범죄(282명, 26.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57명이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바,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뿐만 아니라 마약운전 상시단속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마약 등으로 인한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강화하거나 약물 운전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을 감안한다면 동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11) 마약류 투약 가해자 범죄현황

(출처: 경찰청 회신자료 / 인재근 의원실 편집자료)

범죄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21	236	182	230	214
교통범죄	56	48	45	67	66
절도	42	57	37	45	32
폭행	25	22	26	14	25
손괴	14	16	7	21	18
강간	23	20	24	14	11
상해	15	19	5	13	12
협박	10	5	6	15	12
기타(살인, 폭행, 강제추행 등)	36	49	32	41	38

※ 마약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발의안 ('20년~)

개정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제안일자	처리여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u>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그 형이 확정된 자(신설)</u>	'21.6.28.	소관위 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제148조의2(벌칙) ①~③ (생략)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 강화</u>	'22.4.12.	소관위 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복용 여부를 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u>⇒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를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u>	'23.7.17.	소관위 접수

■ 마약운전 상시단속 방안 수립 및 시행 촉구 관련

-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12)에 따라 경찰이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12)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기를 통해 사람이 내쉬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즉시 감지할 수 있음

그러나 마약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소변, 혈액, 타액, 모발을 확보 후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즉각적으로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관이 관련 검사를 운전자에게 즉시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마약운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 강구 관련

- 정부는 지난 4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¹³⁾을 논의하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및 마약류 범죄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 후 관리하고 있으나 마약운전과 관련하여 별도

13)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023.4.18., 국무회의)

- 그간 추진사항: 범부처 마약대책류 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 후 총력대응.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 1,071명, 모든 초중고특수 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 연간 10시간 의무 실시
- 향후계획: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추진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바,
정부 각 부처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동 건의안에 따라 마약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종합 예방 대책과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마약류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시
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